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264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나770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26490 판결

전문

원고유한회사 A

피고B

변론종결2021. 11. 2.

판결선고2021.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12. 10. 접수 제976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비료제품 및 부산물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은 'E'라는 상호로 산업용기초화합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C은 D의 배우자로서 D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2629호로 D, C을 상대로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고분자응집제를 공급하였으나 대금 80,056,844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23.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56,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0. 7. 14.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C은 2018. 12. 10.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12. 10. 접수 제97644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F,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가압류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 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2019. 7. 18. 무렵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C의 사해의사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9. 7. 18. C을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채권 80,056,84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6246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가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가압류등기]

1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200369	주식회사 F	50,000,000원
2	201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7910	신용보증기금	48,8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

1	2015. 4. 1.	C	주식회사 G	230,400,000원
2	2018. 12. 20.	C	피고	300,000,000원

3)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단62008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0. 가처분결정을 하여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4)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를 기준으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12.경 시가는 약 300,000,000원으로서 원고의 채권액과 선행 가압류 청구금액,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위 시가를 크게 초과하는 상태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에 'D, C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사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결국 2019. 7. 18.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7. 20.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경정원

별지